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4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상임위원장 사임 요구 제도 도입〉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258호)

2024. 10.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 상 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황운하 · 조 국 · 신장식 · 김재원 · 김준형 · 윤종오
강경숙 · 차규근 · 이해민 · 김용민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4. 9. 25.

3. 회 부 일 : 2024. 9. 26.

※ 의안번호 : 425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행법에서는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그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도록 하고 있음. 상임위원장의 임기 중 사임에 대하여는 본회의 동의 또는 폐회 중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외에 다른 사유에 의한 사임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상임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경우 등에도 상임위원장 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상임위원장의 부당 행위에 대하여 그 직을 사임하도록 하는 등의 제지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 상임위원장 직을 유지하

는 것이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연서로 사임 요구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임위원장의 부당 행
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사임 요구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상임위원장) ① ~ ④ (생략) ⑤ <u>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u> <u><신설></u>	제41조(상임위원장) ① ~ ④ (현행과 같음) <u><삭제></u> 제41조의2(상임위원장의 사임) ① <u>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u> ② <u>의원은 상임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연서로 상임위원장 사임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u> 1. <u>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u> 2. <u>정당한 이유 없이 상임위원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u> 3. <u>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회나 국가에 해를 끼친 경우</u> 4. <u>그 밖에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u> ③ <u>제2항에 따른 상임위원장 사임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처음</u>

현행	개정안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 ⑤ (생략)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 사임 요구가 가결되면 제1항 본문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고 상임위원장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50조(간사) ① ~ ③ (생략)	⑥ ----- ----- ----제41조제3항 및 제4항, 제41조의 2제1항----- -----.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단서 신설>	제50조(간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④ ----- ----- ----- . 다만, 제41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위원장이 사임한 때에는 그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상임위원장의 임기 중 사임과 관련하여,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하고 폐회 중인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은 상임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거나 직무태만 또는 부당한 권한 행사를 한 경우 등에 대한 별도의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않음.

참고로, 그동안 국회에서는 상임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불신임 또는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안되었으나, 모두 임기만료 폐기 또는 철회되었음.

[표-2] 상임위원장 사퇴·불신임 관련 결의안 발의·처리 현황

	의안명 (발의자)	발의일자	처리결과
제9대	법제사법위원장(장영순) 외무위원장(최영희) 사퇴 권고 결의안 (송원영의원 외 54인)	1977-10-21	임기만료 폐기
제14대	국회농림수산위원장(정시채) 사퇴 권고 결의안 (강수림의원 외 93인)	1992-11-11	철회
제16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윤수) 사퇴 권고 결의안 (홍사덕의원 외 147인)	2003-10-21	임기만료 폐기
제18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박진) 사퇴 촉구 결의안 (문학진의의원 외 82인)	2009-04-24	임기만료 폐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추미애) 사퇴 촉구 결의안 (조원진의의원등 19인)	2009-07-01	임기만료 폐기
제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신상진) 불신임 결의안 (박홍근의원 등 14인)	2017-02-20	임기만료 폐기
제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정청래) 사퇴 촉구 결의안 (박성중의원 등 11인)	2022-09-08	임기만료 폐기

이에 개정안은 상임위원장 직무 수행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상임위원장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그 직을 사임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상임위원장이 ①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②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고의·중대한 과실로 국회나 국가에 해를 끼친 경우, ④ 그 밖에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연서로 상임위원장 사임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임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임 요구가 가결되면 상임위원장은 그 직을 사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의 의사 절차를 주관하고 안건 심의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임위원장에 대한 사임 요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상임위원장 사임 요건 충족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아니한 사임 요구서의 폐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임 요구와 관련한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¹⁾, 개정안에 따라 사임 요구가 가결되더라도 상임위원장이 사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사임의 효과 발생이 곤란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1) 「국회법」은 탄핵소추안, 해임건의안의 경우 일정기한 내 표결되지 아니한 경우 폐기 간주하도록 규정함.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제112조(표결방법) ⑦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장·국회부의장에 대한 불신임·해임 의결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4. 9. 19.,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표-3] 유사취지 법률안의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개정안	상임위원장 사임요구	◦ 헌법·법률 위반, 직무태만, 고의·중대한 과실로 국회나 국가에 해를 끼친 경우 ◦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발의 및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발의 후 처음 개 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 후 의결 ◦ 사임 요구 가결 시 상임위원장은 사임하여야 함
민형배 의원안	의장 불신임	◦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발의 후 처음 개 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보고, 지체 없이 무기명 투표로 표결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해임	◦ 직무집행상 헌법·법률을 위배하거나 직무태만, 부당한 권한 행사 시 ◦ 재적의원 5분의 2 이상의 발의 및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발의 후 처음 개 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보고, 지체 없이 무기명 투표로 표결 ◦ 해임 의결 시 해임

문 의 처

02)6788-5014